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07,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미국 : 美 재무부, Section 899 철회 조건부 Pillar Two 과세 대상 제외 발표

2025 년 6 월 26 일 미 재무부는 G7 국가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을 글로벌최저한세(Pillar Two)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미국의 예산·세제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OB BB)”중 Section 899 조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ection 899

Section 899 조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디지털세(DST), 우회이익세(DPT) 등 외국의 조세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로 판단될 경우 보복 과세(retaliatory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하는 규정으로, 국가별 납부 세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종업원수 비율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비율에 따른 배분비율을 곱한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KPMG 의견

금번 합의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국한된 사항으로 디지털세(DST), 우회이익세(DPT) 등 다른 조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한국의 경우 해당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 2024 년 APA(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동향

네덜란드 재무부 국무장관이 2025 년 5 월 22 일 의회에 제출한 2024 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과세당국의 사전 세무 결정(tax ruling) 요청 건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년 총 583 건의 요청이 접수되어 2023 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처리된 건수는 608 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사전 세무 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 및 다자간 APA 로의 전환 추세

2024 년에도 일방적 APA 에서 쌍방(Bilateral) 및 다자간(Multilateral) APA 로의 전환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9 년 7 월 네덜란드조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일방 APA 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고, 일방 APA 처리 기간은 평균 12 개월로 증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쌍방 또는 다자간 APA 를 선호하고 있으며, 쌍방 APA 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 년입니다.

결론

네덜란드의 사전 세무 결정제도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APA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된 APA 신청이 가능하며, 일방 APA 보다는 쌍방 및 다자간 APA 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납세자에게 조세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률 발표

법률 발표 배경

2024 년 1 월 8 일, 루마니아는 OECD/G20 의 필라 2(Pillar Two) 규정과 EU 「지침 2523/2022」를 반영한 「법률 제 431 호/2023」(이하 "법률 431")을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 2 적용

대상 그룹에 속한 루마니아 내 구성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 개월 이내(첫 적용 회계연도는 18 개월 이내)에 추가세(Top-up Tax)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룹은 대표 구성 법인을 지정해 신고 및 납부를 일원화할 수 있으며, 이를 세무당국에 통지하는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입니다.

국내 추가세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통지서 양식

2025 년 6 월 20 일, 루마니아 세무당국(ANAF)은 추가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에 관한 통지서 양식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통지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 – 납세자의 이름, 세무등록번호, 주소, 필라 2 상 법인의 유형(최종 모회사, 구성 법인, 지정 구성 법인 등)
- b) 납세자가 속한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 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국적 기업집단 또는 대규모 국내 기업집단의 명칭
- c) 모든 루마니아 내 구성 법인에 대한 정보 – 명칭, 주소, 세무등록번호, 지정 법인 여부
- d) 관할 추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지정 법인에 대한 정보
- e) 필라 2 적용 대상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

이 통지서는 루마니아 세무당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공인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KPMG 의견

해당 명령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양식은 초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관보(Official Journal of Romania)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통지를 제출하는 구성 법인과 관할 추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대표 구성 법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양식이 어떤 형태로 규정될지는 최종 행정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확인될 예정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3-법규국조-2960, 2025.01.12

제목: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 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023 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 현지 실제 세부담율이 15%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특정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는 CFC과세 적용대상이나 '22년, 현지에서 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CFC과세 적용배제대상이었다가, '23년, 다시 도매수입의 감소 등 CFC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여 CFC과세 적용대상이 됨

2. 질의요지

- 2024년 2월, 2022년 이익잉여금과 2023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법인세법제18조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의 적용 범위

3.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 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03 디지털 게이트웨이 : 관세 기능

플랫폼 개요 및 관세 기본기능

KPMG Digital Gateway 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위한 통합 디지털 협업 플랫폼으로, 법인정보 관리, 문서 송수신, 일정 추적,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세무·회계·관세 서비스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관세 기본기능 주요 내용 요약

Database | 디지털 게이트웨이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기본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고객의 실제 통관데이터를 기초로 수행됩니다.

수출입 데이터 기반 정합성 분석 | 수입자, 수출자, HS Code, 과세가격 등 통관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입 신고정보의 일관성 및 누락 여부를 자동 분석합니다.

FTA 활용 및 관세 절감 가능성 진단 | 특혜관세 적용 현황과 원산지 증빙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미활용 품목에 대한 절감 가능 금액을 제시합니다.

통제 항목별 리스크 식별 | 신고 불일치, 과세표준 오류, 원산지 불일치 등 통제 항목별로 리스크 사례를 도출하고, 잠재적 리스크 항목을 시각화합니다.

자문메뉴 및 데이터 추출 | Q&A 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답변을 수취할 수 있는 메뉴와 통관데이터 추출 기능을 통하여 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 추가 기능 Package - Tariff Modeling Tool

기본적인 관세기능에 추가적으로 KPMG Tariff Modeling Tool 은 불확실한 국제관세 정책—예: 펜타닐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등—에 직면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도구입니다. 관세 유형별 impact 을 시나리오로 비교·분석하고, 고위험 품목이나 공급망 집중도 평가,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Risk 예측 등의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망 및 관세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추가관세 시나리오별 관세모델링 | IEEPA,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상호관세 등 다양한 추가관세 유형에 대해 예상 세율을 조정하며 시나리오별 관세 영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및 공급업체 기준 impact 추적 | 제조자 ID, 원산지, 세번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특정 공급업체나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영향을 시각화하여, 공급망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리스크 집중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율변동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관세 영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정보로 활용됩니다.

분석 기반 보고서 생성 기능 |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항목에 따라 맞춤형 PDF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으며, 내부 보고 및 경영진 공유용 자료로 바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출력됩니다. 시스템 주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디지털 게이트웨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추후 KPMG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04 **디지털 게이트웨이 : Operational Transfer Pricing Dashboard (OTP)**

글로벌 이전가격과 관련한 OTP 대시보드 제공

KPMG Digital Gateway의 OTP 모듈은 다국적 기업의 운영상 이전가격 관리를 위한 실무 중심의 분석 도구로, 실제 거래 흐름, 법인별 이익률, 비용 배분 구조 등을 시각적으로 통합 제공하여 이전가격 정책의 이행 현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OTP 주요 기능 요약

정책 대비 이익률 점검 및 자동 조정 제안 | 법인별 실제 이익률을 사전 설정된 이전가격 정책 수치와 비교하여 정책 이탈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 대상 금액 및 해당 품목까지 제안함으로써 사후조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거래 흐름 및 고위험 유형 분석 | 국가 및 거래유형별 그룹 내 거래를 시각화하여, 로열티, 금융, 서비스 수수료 등 고위험 항목의 집중도를 진단하고, 기능 수행 법인(제조, 판매 등)의 역할과 위치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비용 배분 구조 분석 | 비용 센터(Cost Center) 간의 내부 청구 흐름 및 배분 현황을 회계 주기별로 추적·분석하여, 과소·과대 배분, 누락 등 구조적 비효율 또는 정책 미준수 사례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이행 수준의 시각화 및 문서화 지원 | 이전가격 정책의 적용 현황을 트리맵, 원형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고 목적의 추출 가능한 수치 데이터를 통해 내부 보고 또는 세무조사 대응 시 활용 가능한 문서화 기반을 제공합니다.

※ 상기 디지털 게이트웨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추후 KPMG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05 관세

미-베트남 상호 관세 합의

1. 개요

- 미국과 베트남은 상호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 부과하려던 46%의 고율 관세를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상당수를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상세

-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 다수에 2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예고한 46%보다는 크게 낮춘 수준입니다.
- 반대로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상당수를 관세 없이 수입 허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 측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 이 합의는 7월 3일경 양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세부 품목 리스트와 시행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 2025년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발효될 각국 관세율을 최종 확정짓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합의된 20%의 관세만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베트남 정부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세부 일정은 양국 간 실무협의로 조율 중입니다.

3. 시사점

- 이번 미-베트남 간 합의는 상호 관세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실질적인 타격을 회피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향후 베트남 경기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KPMG 의견]

이번 합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베트남을 현지 생산 확대와 같은 공급망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의 경우,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전략적 재배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접근 방식은, 한국이 향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 논리와 전략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특정 국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